

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5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2월 3 일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민간위탁 목적

-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접수 창구 일원화로 기업 불편사항을 신속·정확·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기업경영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관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민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친기업적 단체에 위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수혜를 주고자 함.
-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에 따라 지역상공인을 대변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원활한 기업경영 도모.

2. 민간위탁 내용

구 분	내 용	비 고
민 간 위 탁 기 본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사업 추진○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운영자 선정	
위 탁 현 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요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업애로지원센터로 접수된 애로사항의 검토 처리-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- 자문서비스, 경영상담 간담회 추진 등	
수 탁 자 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역상공인을 대변하고 기업경영에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단체	
위 탁 기 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2019. 1월 ~ 2020. 12월(2년)	

위탁사무 및 내용	○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
운영경비	○ 31,000천원
협약 및 공증	○ 추후 체결

3. 민간위탁 추진 일정

- 기본계획 수립 2019. 1월
-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19. 1월
- 민간위탁 개시 및 운영 2019. 1월 ~ 2020.12월

4. 민간위탁 소요 예산[산출기초]

- 소요예산 : 31,000천원
- 산출기초 (단위 : 천원)

구 분(분야)	내 역	소요예산	비고
합계		31,000	
인건비	2019. 1월 ~ 12월 / 1인	24,036	
여비	2019. 1월 ~ 12월 / 월10일한도	2,400	
일반운영비	사무용품, 우편요금, 홍보물 제작 등	3,364	
업무추진비	간담회 4회	1,200	

5.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기업 경영 및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해소방안
창구인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친 기업적
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내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신속·정확하게
처리하고 원활한 기업경영 도모 및 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
- 민간단체 위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, 특히 제3산단 입
주기업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

6. 기타사항

○ 관련 조례(발췌)
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관련 법령 발췌

<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>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8.13.>

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의 위·수탁 계약서[안]

제천시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와 ○○○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은 「기업애로지원센터」 운영을 위해 각각 위·수탁하기로 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「기업애로지원센터」 운영에 관한 사무를 △△△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사무) “위탁자”가 “수탁자”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기업애로 청취 및 해소
 - 가.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
 - 나. 기업애로 자문서비스
 - 다. 기업체 경영상담 추진실적 관리
 - 라. 설문조사(모니터링)
2.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
 - 가. 기업애로지원센터 홍보물 제작
 - 나. 각종 지원시책 온라인 홍보
3. 기타 “위탁자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위탁기간 및 계약변경) ① 이 계약에 의하여 “수탁자”가 「기업애로지원센터」를 운영하는 기간은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

② 위탁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사업계획서 등) ① “수탁자”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「기업애로지원센터」 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“위탁자”에게 제출하여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“수탁자”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“위탁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비 등) ① “위탁자”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“수탁자”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절차·방법·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· 「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제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등의 규

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“수탁자”는 「기업애로지원센터」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탁자”는 관계법령·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계약에 의한 “위탁자”的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·감사) ①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지도·감독·감사할 수 있다.

② “위탁자”는 제1항의 지도·감독·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민·형사상 책임) ① 「기업애로지원센터」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·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“수탁자”에게 있다.

② 「기업애로지원센터」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“위탁자”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(재판상 청구에 한한다)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계약의 해지) ① “위탁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수탁자”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
2. “수탁자”가 계약의 관계법령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등)을 위반한 때

3. “수탁자”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4. “위탁자”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5.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

② “위탁자”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“수탁자”에게 의견 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“수탁자”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.

⑤ “수탁자”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계약의 해석)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와 「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및 「제천시 물품관리 조례」의 해당조

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“위탁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
③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“위탁자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1조(계약의 효력 등)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,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“수탁자”가 부담한다.

년 월 일

“위탁자” 제천시(제천시 내토로 295)

제천시장

○ ○ ○ (인)

“수탁자” ○○○법인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
대표(대표이사, 이사장 등)

○ ○ ○ (인)

주)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.